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구자근 · 김성원 · 강승규
김선교 · 최수진 · 김승수
박성민 · 유상범 · 정동만
이상휘 · 박형수 · 강명구
김도읍 · 이만희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,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,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 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

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, 제4조의2 신설).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(이하 “비수도권 지역”이라 한다)의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의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2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3. 비수도권 지역 소재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육성 방안
4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
5. 그 밖에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

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촉진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
 2. 비수도권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

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)</p> <p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(이하 “비수도권 지역”이라 한다)의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의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 2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3. 비수도권 지역 소재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육성 방안 4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. 그 밖에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

<신 설>

<신 설>

정하는 사항

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촉진)

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

2. 비수도권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

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

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

·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공동
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